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05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5년 8월 11일
4.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II .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을 추진 중임

나. 이에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원활한 설립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5년도 소요예산을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III.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구 분	시설현황	
서울투자 진흥재단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6·7층 - 규 모 : 면적 991.59㎡(6층 590.2㎡, 7층 401.39㎡) - 시설소유 :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 주요시설 : 경영전략팀, 투자유치팀 등 사무실	

나.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이하 생략)

다. 출연 필요성

- 투자유치 전문성과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에 기반한 투자유치 가능성 확대
- 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증대와 서울 경제성장에 기여

라. 주요사무

- 서울 핵심 개발지 마케팅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홍보
- ‘투자하기 좋은 서울’ 대·내외 홍보 및 설명회 개최
- 투자유치 유망기업 발굴·지원
- 서울 진출기업에 대한 단계별 인센티브 제공 등

마. 소요예산(세부내역 : 붙임)

○ 2025년 출연금액 : 1,795백만원

- 사업비 430백만원, 인건비 383백만원, 운영비 432백만원, 기본재산 500백만원,
예비비 50백만원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인베스트서울 운영 예산 중 일부 변경 및 현물
출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2025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2.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설립 경위

- 서울시는 급변하는 국제 금융·경제 환경 속에서 외국 자본과 기업 유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월 서울경제진흥원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인베스트서울 센터로 개편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음.
- 그러나 글로벌 기업과 자본의 투자 결정에서 도시 단위 투자유치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주요 도시(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등)는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육성이 주업무인 서울경제진흥원이 대행하는 인베스트서울 센터로는 대외 신뢰성 확보 및 파트너십 형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비전2030¹⁾’을 발표하며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²⁾ 연 300억달러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할 독립기관 설립을 계획함.³⁾

1) 서울비전2030(2021년 9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최상 비전으로 하여 2030년까지 확립할 4가지 미래상으로 ①상생도시, ②글로벌 선도도시, ③안심도시, ④미래감성도시를 제시함.

2) FDI(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약자

3) 인베스트서울(서울투자청) 조성계획(2021.9.30., 경제정책실장 방침)

- 동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독립기관의 최종 설립까지의 행정적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인베스트서울 센터를 인베스트 서울(서울투자청)로 확대·운영하면서 최종단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었음.

< 투자전담기관 조성 단계와 기능 >

단 계	기 능	운영기간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기관 기능	2020.1월~ 2022.2월
인베스트서울(서울투자청) 운영	- 투자유치 정보제공 - 마케팅 기능 강화 - 직접투자유치 기능 강화	2022.2월~ 재단설립까지
재단법인 운영	- 산업별 투자유치 전문가 운영 -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킹 형성 - 서울시 외국인투자 관문 역할 - 글로벌 레벨 종합서비스 제공	준비중

- 현재 인베스트 서울은 ▶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한 해외자본 유치, ▶ 글로벌 기업의 서울 유치, ▶ 서울 투자환경 개선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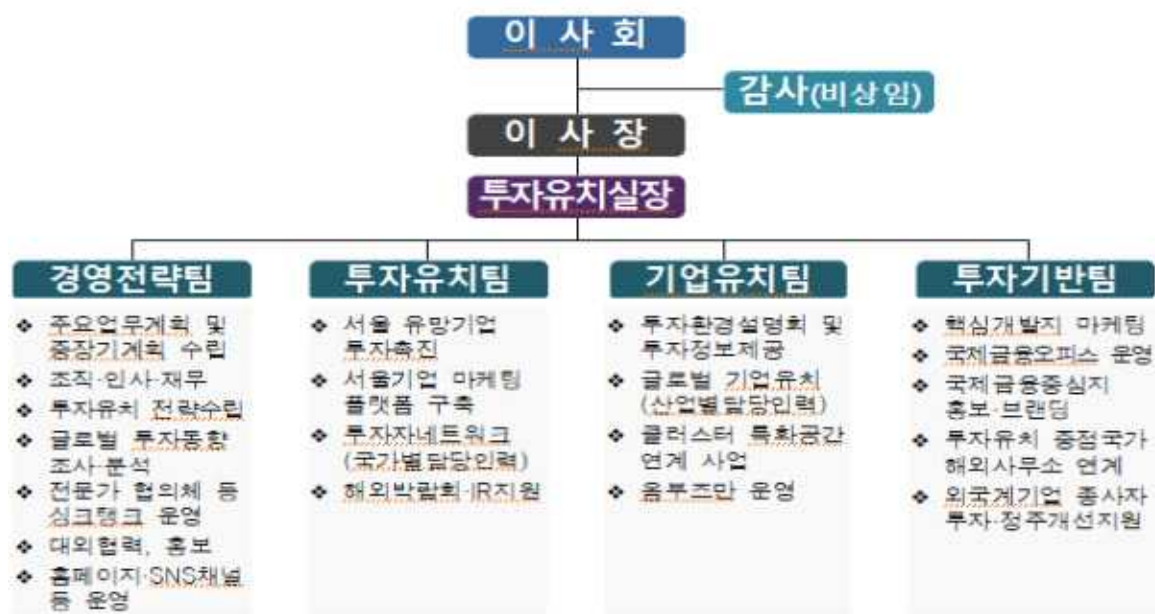
< 인베스트서울 주요사업 >

구분	사 업 내 용
서울기업 해외자본 유치	• CORE기업(투자 유망기업 선발 및 관리) :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 선정 및 육성프로그램 제공 • 투자자네트워크 : 서울기업에 관심있는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 기업-투자자 연결 : 서울 관심국가 등에 온·오프라인 IR
글로벌 기업 서울 유치	• 타깃 기업군 마케팅 : 테크유니콘, 지역본부 등 고급 인력·기술 파급효과가 높은 기업 중심 타깃 마케팅 및 기업유치 IR • 인센티브 : FDI올인원패키지 등 자금지원, 여의도 국제금융오피스 등 공간제공 • 사후관리 : 외국인투자기업 솔루션센터 운영 등 애로사항 관리
서울투자 환경 개선 및 홍보	• 전략수립 : FDI 및 타도시 주요정책 분석 강화, 투자자문회의 등 • 네트워킹 : 주한상의, 외투기업 등 유관기관 중심 네트워킹 진행 • 개발부지·투자환경 홍보 : 부동산 박람회 참여, 주요 투자지 중심 타깃팅

- 한편, 서울시는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출연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24.9),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정(공포, ‘25.5)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이 의결되면 인베스트 서울 운영을 종료하고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운영할 계획임.
-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유일한 상근이사인 이사장을 기관장으로 하고, 4개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총 정원은 51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직원을 충원할 계획임.

<서울투자진흥재단 조직도와 정·현원 계획>

□ 조직도



□ 정원 : 51명(현원은 단계별 확대)

구 분	'25년	'26년	'27년
현 원	17명	34명(+17)	51명(+8)
이사장	1명	1명	1명
실 장	1명	1명(-)	1명(-)
팀 장	4명	4명(-)	4명(-)
책 임	9명	14명(+5)	23명(+4)
선 임	2명	14명(+12)	22명(+4)

- 현재 서울시는 2025년 11월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출범을 위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일반직(경력) 직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임직원 채용공고 진행 현황 >

구분	대상	공고일	접수일	임용예정일
임원 모집	• 상근 이사장 1명 • 비상근이사 6명 • 비상근감사 1명	2025.7.14	2025.8.7 ~ 8.14	2025년 10월중 예정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일반직(경력) 직원 모집	• 실장(2급) 1명 • 팀장(3급) 4명 • 책임 및 선임 (4~6급) 11명	2025.8.27	2025.9.10 ~9.16	'25.10월말~11월초

3. 서울투자진흥재단 출연의 타당성 여부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⁴⁾ 및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제2항⁵⁾에 따라 투자진흥재단의 출연을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설립되면 현재 서울경제진흥원의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베스트 서울의 운영은 종료되고, 그 업무와 재산 등을 승계하여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4)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5)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2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인베스트 서울 운영 개요 >

사무실 위치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빌딩 6·7층

예산 : 52억 9천 8백만원(2025년)

사업기간 : 2020년 ~ 현재

지원대상 : 서울소재 기업, 글로벌 잠재 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수행주체 : 서울경제진흥원(공기관 대행사업),

3팀(투자전략·투자마케팅·글로벌기업지원), 정원 22명(현원 16명)

- 다만, 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는 동 동의안이 의결되면, 인베스트 서울 운영의 10월말 예상 집행잔액인 17억 9천 5백만원을 서울투자진흥재단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재단의 고유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임.

< 인베스트 서울 운영의 예산변경 계획안 >

□ '25년 인베스트서울 집행잔액 (11~12월)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합 계	1,795,992
고유사업비 소계	1,065,058
1. 서울 투자환경 글로벌 브랜딩 및 홍보	313,980
서울 개발부지 마케팅을 위한 부동산 투자전문 박람회 참가 및 홍보	162,409
서울 투자환경 설명회	79,077
서울 투자환경 글로벌 홍보	72,494
2. 글로벌 자본 유치	172,892
투자유치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	79,200
글로벌 투자자 발굴 다각화	103,692
전략산업 중심 유망기업 IR 개최	-
3. 해외 기업 유치	578,186
글로벌기업 발굴 및 맞춤형 마케팅	281,455
해외기업 진출단계별 인센티브 (올인원패키지) 제공	254,585
글로벌 투자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	42,146
일반관리비 소계	730,934
인건비	576,279
기관운영경비	154,655

□ (재)서울투자진흥재단 '25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합 계	1,795,992
고유사업비 소계	430,150
1. 서울 투자환경 글로벌 브랜딩 및 홍보	125,950
서울 개발부지 마케팅을 위한 부동산 투자전문 박람회 참가 및 홍보	90,450
서울 투자환경 설명회	15,500
서울 투자환경 글로벌 홍보	20,000
2. 글로벌 자본 유치	69,200
투자유치 유망 CORE 어워드 행사	29,200
성과우수기업 지원금	40,000
3. 해외 기업 유치	235,000
해외기업 진출단계별 인센티브 (올인원패키지) 제공	235,000
일반관리비 소계	815,842
인건비	383,701
기관운영경비	432,141
기본재산 소계	500,000
기본재산 출연(현금)	500,000
예비비 소계	50,000
일반예비비	50,000

- 한편 출연금과 관련하여 2025년도 인베스트 서울 운영의 사업비 편성목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00-308-13)’로 이는 ‘출연금’ (100-306-01)과 동일한 목그룹에 해당되어 예산의 변경사용 요건에 해당되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가 제기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예산의 이용, 전용과 달리 예산의 변경사용이 과용되어 지방의회 의결 취지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2024년에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하여 예산의 변경사용을 통한 세부사업 신설을 제한하였는바, 이와 같이 ‘출연금’이라는 신규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예산편성 기준 관련 내용 >

27 예산의 변경사용 허용범위 제한

- 현행 법령 등을 고려하여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불가하도록 개정
- ※ 전용의 경우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전용 불가(「지방재정법」 제49조)

현행	개정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3. 예산의 변경 ☐ 예산의 변경사용 (생략)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가능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3. 예산의 변경 ☐ 예산의 변경사용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u>변경사용 불가</u>

- 다만 서울시는 서울투자진흥재단의 고유사업은 인베스트 서울 운영과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같은 사업이며, 동 동의안의 의결을 받으면 예산의 변경사용은 시의회의 의결 취지에도 부합하게 되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또한 서울시는 투자진흥재단의 연중 설립이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며, 2026년도부터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 투자유치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11월초 출범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국가 차원의 주력 산업과 지역 차원의 유력 산업이 상이한 경우가 있고, 지역 특성이 강하거나 외국인 투자의 수요가 높은 경우 도시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자진흥재단의 적기 설립을 위한 동 동의안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투자진흥재단이 11월에 출범한다면 출범 초기 업무 환경 조성하고 2026년 신규사업 준비를 함께 추진해야 하므로 업무 혼선과 과부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자	연락처
김성만 전문위원	02-2180-8054